

2. 지목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가. 지목이란

나. 특별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 토지

다. 기타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

라. 지목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토지

가.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28가지로 구분한 것.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28개)

나. 특별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 토지

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 전, 답, 과수원, 유지
2. 농지법에 의한 용도변경을 받아야하는 토지
-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전용을 받아 목적달성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을 받아야만 다른 건축행위(용도변경)를 할 수 있음
3.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 임야
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 “목장용지” 중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인 경우 (반드시 확인)
5. 주차장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 “주차장”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용지

다. 기타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

국, 공유지는 그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 등 영구 공작물 축조가 불가함. 다만, 그 법률에 의한 점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음

라. 지목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토지

광천지, 대,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유원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